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1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38호)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8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0조 제1항 등)	5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8271호)

가.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19.

다. 회 부 일 : 2025. 2. 2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8838호)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9282호)

가.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271호)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838호)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282호)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0조 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상향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안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김문수의원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김예지의원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동진의원안)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안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김문수의원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김예지의원안)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고동진의원안) 15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김문수의원안)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문수의원안	김예지의원안	고동진의원안
제 70 조 (별 칙)	제 70 조 (별 칙)	제 70 조 (별 칙)	제 70 조 (별 칙)
① 사람을 비	① -----	① -----	① -----
방할 목적으로	-----	-----	-----
정보통신망을	-----	-----	-----
통하여 공공연	-----	-----	-----
하게 사실을	-----	-----	-----
드러내어 다른	-----	-----	-----
사람의 명예를	-----	-----	-----
훼손한 자는 3	-----	-----5	-----7
년 이하의 징	-----	년-----	년-----
역 또는 3천만	-----1억원	-----5천만	-----2억원
원 이하의 벌	-----	원-----	-----
금에 처한다.	-----.	-----.	-----.
② 사람을 비	② -----	② -----	② -----
방할 목적으	-----	-----	-----
로 정보통신	-----	-----	-----
망을 통하여	-----	-----	-----
공공연하게	-----	-----	-----
거짓의 사실	-----	-----	-----
을 드러내어	-----	-----	-----
다른 사람의	-----	-----	-----
명예를 훼손	-----	-----	-----
한 자는 7년	-----	-----10년	-----15년
이하의 징역,	-----	-----	-----

현행	김문수의원안	김예지의원안	고동진의원안
<u>10년</u>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생략)	----- ----- ----- <u>10억원</u> ----- -----.	----- ----- ----- <u>1억원</u> ----- -----.	- <u>15년</u> ----- ----- ----- <u>15억원</u> ----- -----.
제75조의2(몰수 · 추징) <u>제72</u> <u>조제1항제2호</u> 및 <u>제73조제7</u> <u>호의 어느 하</u> <u>나에</u> 해당하 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 반행위와 관 련하여 취득 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 · 추징) <u>제70</u> <u>조제1항, 제70</u> <u>조제2항, 제72</u> <u>조제1항제2호</u> 및 <u>제73조제7</u> <u>호</u> ----- ----- ----- ----- ----- ----- ----- ----- ----- -----	제75조의2(몰수 · 추징) (현 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 · 추징) (현 행과 같음)

현행	김문수의원안	김예지의원안	고동진의원안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 할 수 있다.	----- -----, - ----- ----- ----- -----.		

다. 검토사항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1)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러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구분	사실적시	허위사실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김문수의원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김예지의원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고동진의원안)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15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반복·재생산됨에 따라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획득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 유튜버는 관련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 유명인의 사건사고 또는 의혹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 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인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 일명 ‘사이버 렉카’ 등 일부 유튜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의 몰수·추징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안 제70조)

-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함께 「형법」과의 정합성 문제,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미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만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국 입법례>

국가	구성요건	법정형
독일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유포한 자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공연성이 있거나 문서의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국가	구성요건	법정형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신용을 위해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공연성이 있거나 집회·문서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프랑스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배포물, 현수막·게시물, 전자적 방식의 공중통신 수단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12,000유로의 벌금
		(출신·소속이나 민족·국가·인종·종교를 사유로 하는 경우) 1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의 형벌
일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만 지나치게 높은 형을 규정하는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과의 법적 균형,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법적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은 기존의 형량 체계와 비교할 때 과도하고 다른 중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몰수·추징(안 제75조의2)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
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목
적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⁴⁾,

4)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⁶⁾.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⁷⁾.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6)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3년)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 모두 ‘중대범죄’에 포함됨.

7)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벌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몰수·추징 등을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 다수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230

8) 제2202372호(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제2202403호(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제2202475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제2202842호(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제2204842호(장경태의원 대표발의)